실무수련 제도 관련 Q&A

1.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만 볼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2019. 12. 31까지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정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만 갖추면 실무수련을 거치지 않고 2026. 12. 31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부터는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과 외국건축사자격 소지자만 건축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 4년제 건축학 전공자 또는 건축학 비전공자도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나요 ?

A 없습니다. 다만, 4년제 건축학 전공자 또는 건축학 비전공자가 실무수련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축학 교육과정이 개설된 건축대학원에서 2학기(건축학 비전공학사는 4학기)이상 건축학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건축대학원 외의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이수)한 사람 중 실무수련 신고(등록)가 가능한 경우는 ?

A 일반(또는 산업)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경우, 당해 대학원의 건축학 관련 총 개설(이수)학점 요건이 충족되는 대학원에서 건축학사는 2학기(건축 비전공학사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실무수련 신고가 가능합니다.

■ 건축대학원 외의 대학원의 실무수련 자격요건 조건표

대학교 전공학위	대학원 건축학 개설(이수)학점		이수 학기	실무수련 자격유무	실무수련신고시 추가 제출서류
	개설학점	이수학점			
인 증	57이상	57이상	2학기 이상	가 능	없 음
	57이상	57미만	2학기 이상	가 능	건축학 개설과목 확인서
	57미만	57미만	–	불가능	–
비인증	96이상	96이상	4학기 이상	가 능	없 음
	96이상	96미만	4학기 이상	가 능	건축학 개설과목 확인서
	96미만	96미만	–	불가능	–

4. 일반(또는 산업)대학원의 건축학 개설과목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

A 일반대학원의 '건축학 개설과목 확인서'는 본인의 재학기간 동안 건축학 개설과목과 학점 등이 실무수련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서류로서 「대학교, 학과, 전공명칭과 학기별 개설과목 및 학점 등」을 기재하여 해당 서류에 학과장이 날인한 서류를 말합니다.

5. 인증받지 않은 5년제 이상 건축학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이수한 사람은 언제까지 이수한 경우 실무수련 자격이 있나요 ?

A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5년제 이상 건축학과 또는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이수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사람만 실무수련 자격이 있습니다.

6. 졸업한 5년제 이상 건축학 대학교(또는 건축대학원)가 비인증 건축학 교육과정인 경우 개인적으로 인증받을 방법이 있나요 ?

A 졸업한 대학교(원)의 건축학 교육과정이 비인증 대학교(원)인 경우, 개인적으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 '교육이력평가'를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7. 실무수련은 건축사사무소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

A 예, 실무수련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며 감독건축사의 지도, 감독하에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사법 시행령(제23821호, 2012.5.30.) 부칙 제4조에 따라 실무수련 신고 전 쌓은 실무경력의 실무수련 인정특례 적용대상자가 2012.5.31기준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건설회사 등에서 쌓은 실무경력을 실무수련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8. 실무수련 학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실무수련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실무수련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 입사 이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자로 신고하고, 본인의 실무수련 기간동안 수련경력을 신고, 관리해야 합니다.

9. 실무수련자로 신고한 경우 수련경력을 수련기간 종료시점에 해도 되나요 ?

A 실무수련 경력은 가능한 본인이 참여한 각각의 프로젝트 완료 후 빠른 시일내 신고, 관리하는 것이 경력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지연하다 감독건축사의 사망(폐업 등)시 감독건축사의 확인을 받을 수 없어 수련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 본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이란 ?

A '실무수련'은 실무수련 학력요건을 갖춘 사람이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지도, 감독하에 3년(또는 4년)이상 실무수련을 완료한 후, 예비시험 없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은 상기와 같은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을 말합니다.

※ 특기사항 : 4년제 건축학 전공자 또는 건축학 비전공자는 건축학 교육과정이 개설된 건축(또는 일반)대학원에서 2학기 (건축학 비전공학사는 4학기)이상 건축학교육을 이수하여야 실무수련자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Q3. 참고)

11.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 본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

A '실무경력'이란 4년제 이하 건축관련학과 졸업(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격(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을 갖춘 사람이 건축사 예비시험을 거쳐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 등에서 소정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건축사 (예비,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실무경력기간'은 학력 또는 기술자격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 특기사항 :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 12월 31까지 유지되고 2020년부터 폐지되며, 2019년까지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 KARB
Korea 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Korea 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실무수련제도안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 KARB
Korea 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건축학 교육 이수자의 실무수련 제도 안내

실무수련이란

■ 소정의 건축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건축실무에 관한 지식과 전문기술, 경험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수련과정임

■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5년제 이상 건축학 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비인증 건축학교육 이수자 4년)이상 실무수련을 시험직전일까지 완료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건축사 자격소지자는 통산 5년이상 건축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 자격시험 응시 가능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경과조치 대상 : 예비시험 합격자 (예비시험 2019.12.31 폐지)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정의 실무경력을 갖추면 건축사자격특별전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무수련을 거치지 않고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소정의 실무경력 : 5년제 인증학위 4년, 기타 5년 이상)

실무수련 자격 요건 및 수련기간은

■ 실무수련 자격 요건 및 건축학 교육과정 인증 여부에 따른 실무수련 기간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자 격 요 건	실무수 기간	비 고
인 증	1)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2) 건축학 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2학기 이상 이수자 3) 건축학 비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4학기 이상 이수자	3년	
비인증	1)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2) 인증된 건축대학원 외의 대학원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건축학 전공 학사로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② 건축학 비전공 학사로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③ 건축설계 48학점 이상을 포함한 건축관련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대학원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4년	2023. 12. 31 까지 이수한 사람에 한함

※ 우리나라 건축학교육 인증기관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 국외에서 건축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 '교육이력평가'를 신청하여 우리나라 건축학 교육과정과 동등성을 인증받은 경우 실무수련 자격 인정

실무수련 감독건축사 자격 및 의무

■ 실무수련 감독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이어야 함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본인 또는 소속 건축사 중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건축사를 실무수련 감독건축사로 지정해야 함

■ 감독건축사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지도 · 감독하고 수련자의 실무수련 확인서 기재내용을 확인, 서명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음

수련영역별 최소 수련일수 및 실무수련 완료기준

■ 실무수련자는 실무수련 기간 중 다음의 실무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 함

실무수련 영역 및 수련영역별 최소 수련일수

– 실무수련 영역 : 설계, 공사감리, 기타 (세부내용 :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1의2 참조)
– 최소 수련일수 : 설계 365일 이상, 공사감리 80일 이상, 기타 20일 이상(총 465일이상)

■ 실무수련은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자로 신고하여 '실무수련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수련기간이 3년(또는 4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고된 실무수련 경력이 수련영역별로 최소 수련일 이상을 충족되어야 완료할 수 있음

실무수련 신고 전(前) 실무경력의 실무수련 인정특례 기준

■ 실무수련 신고 전 쌓은 실무경력 인정특례 적용대상은 당해법령 시행일(2012년 5월 31일) 전에 5년제 건축대학교 또는 건축대학원에서 건축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시행 전에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자에 한함

실무수련 신고 전 실무경력의 실무수련 인정기준(건축사법 시행령(제23821호, 12.5.30) 부칙)

– 실무수련 자격에 해당하는 건축학교육 이수자 중 2012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실무수련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신고전 실무 경력은 80%, 신고 이후에는 100%를 실무수련으로 인정

단, 2012. 5. 31 이후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이후 실무경력은 실무수련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무수련 신고 후 승인일부터 실무수련을 100% 인정
(2012. 5.31. 이후 근무처 변경시 변경전 실무경력은 퇴사일까지 80%인정)

실무수련 신고 및 관리

■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실무수련 관리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KARB)'에 실무수련자로 신고하여야 함

실무수련자 신고 및 제출서류 (세부절차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 참조)

– 실무수련 관리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
– 신고방법 : 건축사등록원(www.kirakarb.or.kr) 홈페이지 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
– 제출서류 : 실무수련신고서(규칙 제10호서식), 건축학학위과정 이수증명서,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4대보험 중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 증명사진 2매

■ 실무수련자가 수련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무수련확인서(규칙 제14호서식)」에 참여사업별/수련영역(설계, 공사감리, 기타)별 수련기간을 기재하여 감독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관리해야 함

실무수련 및 건축학교육 인증 관련 문의처

■ 실무수련 신고 및 제도 안내
–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시험국 등록실적팀 (전화 : 02-3415-6886~9)
– 건축사등록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rakarb.or.kr)

■ 건축학 교육 인증대학(원) 확인 및 인증 제도안내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전화 : 02-521-1930)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aab.or.kr)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기준(현행)

구 분	학력 (또는 기술자격) 요건			경력 요건 (실무경력 또는 실무수련)	비 고
예비시험 응시자격	학 력	건축대학원(건축)			2019.12.31까지 (법 부칙 제5조)
		대학교(건축)			
		전문대(건축)		실무경력 (2년)	
		고등학교(건축)		실무경력 (4년)	
		일반대학원(건축)			
	기술자격 (건축 분야)	기술사			
		기 사		자격취득 전후 통산 3년	
		산업기사		자격취득 전후 통산 5년	
자격시험 응시자격	예비시험 합 격 자	5년제	인 증	실무경력 (4년)	2026.12.31까지 (법 부칙 제3조)
			비인증	실무경력 (5년)	
		그 외		실무경력 (5년)	
	외국건축사			통틀어 5년	법 제13조
	인증된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실무수련 (3년)	법 제13조
	건축학사 전 공 자	인증된 건축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학사 비전공자	인증된 건축대학원 4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학교육인증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한 교육과정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실무수련 (4년)	2023.12.31 졸업자까지 (시행령 제6조의4) (시행령부칙 제4조)
	건축학사 전 공 자	인증건축대학원외 대학원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 총57학점↑) 2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학사 비전공자	인증건축대학원외 대학원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 총96학점↑) 4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학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이 상호 연계운영 대학원 (건축설계 48학점↑포함 건축학 120학점↑) 2학기 이상 이수자				